

# 한국부식학회 회칙

## 제1장 총칙

제1조 본학회는 한국부식학회(이하 본회라 칭함)라 부른다.

제2조 본회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3조 본회는 부식 및 방식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보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- ㄱ. 학술 강연회와 강습회의 개최
- ㄴ. 회지와 학술 간행물의 발행 및 배부
- ㄷ. 연구의 장려 및 우수한 업적의 표창
- ㄹ. 부식과학기술에 관한 국제 교류
- ㅁ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## 제2장 회원

제5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학생회원, 단체회원,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나눈다. 정회원중 종신회원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.

제6조 정회원은 부식과학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식이 있거나, 이에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.

제7조 대학에서 제6조에 규정한 학문을 배우고 있는 자는 학생회원으로 할 수 있다.

제8조 학교, 도서관, 연구소,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은 단체회원으로 할 수 있다.

제9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업기관은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.

제10조 본회에서 인정하는 자는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.

제11조 본회에 정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정회원 2명의 추천이 있어야 하고, 입회허가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.

제12조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의 입회는 이사회가 의결한다.

제13조 명예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

준을 얻어 결정한다.

제14조 본회의 입회비는 500원으로 하며, 회비는 1개년에 정회원 1,000원, 학생회원 500원 단체회원 3,000원 이상, 특별회원 10,000원 이상으로 한다 단, 평의회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 종신회원 회비는 정회원 회비 10년분으로 한다. 별도로 제정하는 간행물 분포 세칙에 따라, 본회 정기간행물의 우송료 및 기타 인쇄물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조 회비는 익년도분을 년말 안으로 전납하여야 한다. 일단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
제16조 회비를 체납한 자는 회원자격을 정지한다. 본조목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가 체납회비를 납부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입회를 승인할 수 있다.

제17조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평의회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.

## 제3장 임원

제18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ㄱ. 회 장 1명
- ㄴ. 부회장 약간명
- ㄷ. 평의원 약간명
- ㄹ. 감 사 2명
- ㅁ. 이 사 약간명(총무, 재무, 사업 및 편집 각 2명)

제19조 회장, 부회장, 평의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시작한다. 임원은 중임할 수 있으며, 그 임기가 끝난 후임지라도 후임자가 지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.

제20조 회장, 부회장, 평의원, 이사는 임기만료 전에 정회원 중에서 평의회가 그 후보자를 선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. 총회를 개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회원의 서신투표에 의한 인준을 얻는다. 관, 서신투표에 있어서는 총투표수가 정회원수의 1/1 이상이어야 하며 그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그 인준 결과를 정회원 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1조 회장, 부회장, 감사 및 이사에 결원이 될 때에는 평의회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. 보임된

임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22조**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.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**제23조**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.

**제24조** 평의원은 본회의 중요회무를 심의한다.

**제25조** 감사는 본회의 모든 회계를 감사한다.

**제26조** 편집이사는 별도로 제정된 편집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본문심사 및 채택업무를 주관한다.

**제27조** 본회에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.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 및 평의원회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추대한다.

#### 제 4 장 회 의

**제28조** 회의는 총회, 평의원회,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로 나눈다.

**제29조** 총회는 정회원으로써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에 회장이 소집한다. 단,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는 변경할 수 있다.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
- ㄱ. 평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때
- ㄴ. 정회원 1/10 이상으로 부터 의안을 갖추어 요구가 있을 때

**제30조** 총회는 회의 7일전까지 그 심의안건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또는 본회 정기간행물 혹은 신문지상에 광고하여 이를 소집한다.

**제31조** 다음 사항은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- ㄱ. 전년도 수지결산
- ㄴ.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
- ㄷ.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

**제32조** 다음 사항은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ㄱ. 전년도 사업
- ㄴ.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

**제33조**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써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7일전까지 심의안건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한다.

**제34조**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- ㄱ.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
- ㄴ. 표창에 관한 사항

ㄷ.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

**제35조**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감사 및 이사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**제36조**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- ㄱ. 본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구정의 제정 및 개폐
- ㄴ.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을 추진, 집행하는 제위원회 설치
- ㄷ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.

**제37조** 회장은 총회,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**제38조**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가 의장이 되고 편집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를 소집한다.

**제39조** 총회는 정회원의 1/10 이상, 평의원회는 평의원의 1/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 총회 또는 평의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 또는 평의원이 서면위원을 하는 경우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.

**제40조** 각 회의의 의결은 출석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. 가, 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#### 제 5 장 자산 및 회계

**제41조** 본회의 자산은 다음 항목으로써 구성된다.

- ㄱ. 회원이 납부한 회비
- ㄴ. 기부금과 기부물채
- ㄷ. 자산에서 생긴 수익
- ㄹ. 기타의 수입

**제42조** 다음 각 항의 자산을 기본자산으로 한다

- ㄱ. 기본자산으로 지정, 기부된 것
- ㄴ. 평의원회에서 기본자산에 편입하기로 의결된 것.

**제43조** 기본자산 이외의 자산은 통상자산으로 한다.

**제44조** 기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수리한다.

**제45조** 기본자산의 원본은 처분할 수 없다. 단, 사무집행상 필요할 때는 평의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.

**제46조** 본회의 경비는 통상자산으로써 충당하고 경비의 잔여가 생겼을 때는 다음해 경비에 이월한다. 단,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자산에 편입할 수 있다.

**제47조** 기본자산의 관리방법은 평의원회에서 정하고 회장이 이를 관리한다.

**제48조** 다음해 예산안은 매년 10월에 차기 총무이사로 선임된 자가 편성한다.

**제49조** 필요한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.

**제50조**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# 제 6 장 지 부

- 제51조 특별시, 직할시 및 각도에 본회 지부를 둘 수 있다.
- 제52조 지부는 해당 시, 도에 거주하는 정회원 50명 이상으로써 구성한다. 단, 학생회원 2명을 정회원 1명으로 간주한다.
- 제53조 지부에 직장 또는 단체별로 분회를 둘 수 있다.
- 제54조 지부에는 다음의 지부 임원을 둔다.
 

가. 지 부 장	1명
나. 지부평의원	약간명
다. 지부이사	약간명
르. 지부감사	약간명
- 제55조 지부의 임원은 지부 규약에 따라 선출하고 지부장은 지부의 추천을 거쳐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.
- 제56조 지부장은 매년 1월에 임원명단, 분회 및 분회 회원 명단, 전년도 회부 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본회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57조 지부는 본회의 총회,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의 결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.
- 제58조 지부규약은 지부가 작성하되, 본회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59조 지부에 소속하는 정회원 및 학생회원의 회비

의 1/3은 지부 운영에 충당한다.

### 제 7 장 분 회

- 제60조 동일한 직장 또는 단체에 속하는 정회원 5명 이상으로써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. 단, 학생회원 2명을 정회원 1명으로 간주한다.
- 제61조 분회에는 분회장 1명을 둔다.
- 제62조 분회장은 본회 회장 또는 지부장이 임명한다.
- 제63조 분회장은 매년 1월에 소속회원 명단을 본회 간사장 또는 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회원의 이동이 있을 때는 즉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제 8 장 회칙변경과 해산

- 제64조 본회 회칙을 변경하려면 총회에서 출석자의 2/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제65조 본회의 예산의 의결을 하려면 총회에서 정회원의 3/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제66조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자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한다.

### 부 칙

- 제67조 본 회칙은 1971년 4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